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대학교에서 수행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부천대학교(이하 “본 대학교” 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 교직원 및 각종 계약에 의해 연구과제에 접근할 수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특정연구개발사업 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 제2장 연구보안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제4조(연구보안관리 담당자 및 보안관리 책임자 지정)** 총장은 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수행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구과제 관리자(연구책임자를 포함한다)를 연구보안관리 담당자로, 산학협력단장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연구과제의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을 위임한다.

**제5조(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위원회(이하 “보안위원회” 라 한다)를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② 보안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5인 이내의 심의위원을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할 수 있다.

③ 보안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보안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⑤ 보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보안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 4. 연구대외비의 공개 및 대외제공에 관한 사항
- 5. 보안관리담당자의 임면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⑥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케 할 수 있다.

### 제3장 보안등급 분류 기준 및 보안조치 등

**제6조(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과제

- 가.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하여 기술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 나.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다.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마.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바. 연구결과물이 대학의 중요한 경제적 자산이 되거나, 누설될 시 대학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 사. 그 밖에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 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I·II·III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I·II·III급 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분류절차)**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하여 [별표1]의 보안등급 분류 기준 점검표를 보안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안관리담당자는 해당 과제에 대해 보안등급 분류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재분류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장은 분류된 보안등급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담당관의 보안등급 분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안위원회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보안등급 변경)**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등급 분류 변경 신청서[별첨2]를 제출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변경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보안등급을 변경한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① 보안관리책임자, 보안관리담당자 및 연구과제 책임자는 보안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외국기업, 국외연구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안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국가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외국인의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보안관리담당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외국인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가능 자료를 제한한다.

4.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이 요구되는 유무형의 정보, 자료, 결과물에 대하여 비밀정보로 취급하고, 관련 연구시설 등이 무단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5.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과제 협약서와 함께 보안유지 의무 및 위반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별표3]의 보안서약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연구책임자는 연구내용 및 연구결과의 대외 공개 및 반출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승인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적절한 보안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산학협력단은 보안점검 및 교육을 정기 및 수시로 실시한다.

**제10조(보안관리 현황보고 자료 제출)** 연구책임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기 위한 보안과제 관리현황을 전문기관(또는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안사고 발생 시 처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관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보안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며, 보안관리책임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관련 내용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정보를 유통·관리·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보안 관련 사고

② 보안관리책임자는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사고 수습 후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에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교육 등 관련 대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안관리 실태점검)** ① 보안관리책임자는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 보안의식을 고취시키며 보안업무수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실태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안관리 위반 시 조치)** ①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중은 물론 기간 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사항은 관련 법규 및 연구개발과제 관련 제규정을 따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전에 보안등급을 확정하여 관리되고 있는 계속과제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분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② (준용) 보안과제로 분류된 산업체 연구개발과제는 이 지침을 준용한다.



## 보안등급 분류 변경 신청서

■ 연구책임자

- 소속 :
- 직명(직위) :
- 성명 :
- 연구과제명(신청, 수행) :
  - 지원 기관 :
  - 지원사업명 :
- 연구과제 보안등급 분류 변경신청 사유(보안 등급에 분류에 필요한 주요 내용) :
  -

○ 보안등급 분류 사항(제5조에 의한 보안 등급 기재)

구 분	보안과제(등급)	일반과제(등급)	비 고
연구책임자 분류			1차 분류
심의회 변경 분류			심의 검토

20 . . . .

1차분류자 (세부과제)연구책임자 : (인)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보안서약서(참여연구원)

- 소속(대학,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연구과제명 :

상기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상의 보안관리 지침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 이를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경우 동 과제 참여 제한 및 타 과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또한 그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지식재산권 확보와 관련한 기술 유출 가능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2.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 개발관련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3. 외국의 기술이전 거부로 국산화가 추진중이거나 미래의 기술적·경제적 가치 및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술로서 보호 필요성이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4. 국방·안보관련 기술로 전용가능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유지
5. 연구책임자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물의 반출·대외제공·공개 금지
6. 연구과제 사항은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 금지
7. 외국인을 접촉할 시 현황을 신고하여 관리부에 기록 유지
8. 연구책임자의 출입제한 구역 및 주요 연구자료의 접근 제한 규정 준수

서약자 성명 : (인)

**부천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보안서약서(퇴직 및 계약만료시)

- 소속(대학, 학과) :
- 직명(직위·급, 학년) :
- 성명 :
- 연구과제명 :

본인은 국가기술개발과제 수행과정 중 직무상 지득한 핵심기술 및 정보, 과학기술정보 관련 제반 비밀사항 및 중요 기술비밀을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지 않고, 소속기관 소유의 모든 유·무형품과 주요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및 결과를 반납하고,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떠한 제재와 손해배상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 . .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여권번호) :

서약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부천대학교총장 귀하**



<별첨 4>

## 외국인 접촉현황 관리부(참여연구원)

○ 연구과제명 :

○ 연구책임자 :

참여 연구원				접촉사유 및 상대자	책임자 (서명)
성명	접촉일시	장소	방법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접촉사유 :  -상대자 ·국적 : ·성명 : ·연락처 :	



<별첨 6>

## 보안과제 현황관리

과제정보

사 업 명		사 업 연 도	
과 제 명		과 제 번 호	
기관명(주관)		연구책임자	
보 안 등 급	<input type="checkbox"/> 보안과제 <input type="checkbox"/> 일반과제		
보안과제 관리 사유			

외국기관 참여현황

구분	기관명	위탁/공동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단위 : 천원)	비고
공동/위탁					

외국인 참여현황

구분	성명	참여형태	국적	외국인번호 등 (관리번호)	참여과제명	비고

※ 구분란 : 주관기관, 공동기관, 위탁기관 등, 참여형태 :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 외국인 참여의 경우 외국인 신상카드(참고)를 작성하여 관리

외국인 접촉 현황

참여연구원	외국인 (접촉대상/국적)	접촉일	접촉사유
홍길동			

외부기관 파견자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파견기관	파견기간	파견사유	신원조회여부 및 결과
홍길동		(주)000			

핵심인력 현황

성명	주민등록번호	핵심인력 분류사유	비고

연구개발결과물 외부제공 현황

결과물	배포처	배포부수	배포일	비고

※ 보안과제 현황관리 양식이나, 일반과제의 경우에도 현황관리가 필요한 사항은 본 양식을 활용하여 관리